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1.(수) 10:00

제23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
자원에 관한 조례안
(경제환경국 소관)



복 지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추병수

서울특별시 금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160호
- 나. 제 출 자 : 조윤형 의원
- 다. 제출일자 : 2021. 11. 10.
- 라. 회부일자 : 2021. 11. 10.

2. 제안이유

전기통신금융사기(보이스피싱 등) 피해 발생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구청장·금융사·주민의 책무 (안 제3조 ~ 제5조)
- 다.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
및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11. 10. ~ 11. 15.

5. 검토의견

가. 조례안 제정 이유

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예방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나. 주요 내용

1)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, 제3조)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정의에 따름
- 전기금융사기 예방 시책의 마련을 규정함

2) 금융사, 구민의 책무(안 제4조, 제5조)

- 금융사, 구민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
3) 예방 등 지원 (안 제6조)

- 홍보, 예방 교육 등 지원사업의 범위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함

다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(이하 ‘보이스피싱’)로부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갈수록 다양한 형태로 정교화되고 있는 범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1. 10. 21.] [법률 제18092호, 2021. 4. 20., 일부개정]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